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2000. 11. 28
조례 제2536호]

전문개정 2006. 10. 18 조례 제2778호
일부개정 2018. 10. 30 조례 제35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30>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30>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사무국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 10. 3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

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8. 10. 30>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제1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